

화순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등개정조례안

심사 보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2. 1. 화순군수

나. 회부일자 : 2002. 1. 30

다. 상정일자 : 2002. 1. 30

(제10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기획감사실장 배병선

나. 개정사유

-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의 개정 (2001. 10. 9)으로 총무과 소관이던 감사업무가 기획예산실로 이관됨에 따라 기획예산실이 기획감사실로 명칭변경되는 등 직제가 개편 된 실과의 명칭을 수정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화순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, 화순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, 화순군조례규칙의입법예고및공포등에관한조례, 화순군공보등의반행에관한조례안에 명시된 "기획예산실장"을 "기획감사실장"으로 자구 수정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양정열)

- 본 개정 조례안은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(2001. 10. 9)으로 기획감사실장의 명칭이 기획예산실장으로 변경되었기 바로 잡기 위한 개정조례임.
- 조례의 내용이 현실과 부합될 수 있도록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써 조례, 규칙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 개정 절차상의 하자나 상위 관련 법규와의 상충여부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질의답변요지

"생략"

5. 토론요지

"생략"

6. 심사결과

“원안의결”

첨 부 : 화순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등중개정조례안

화순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등개정조례안

제1조(화순군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개정) 화순군지방채
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및 제12조중 “기획예산실장”을 “기획감사실장”으로 한다.

제2조(화순군민간투자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) 화순군민
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중 “기획예산실장”을 “기획감사실장”으로 한다.

제3조(화순군조례·규칙의입법예고및공포등에관한조례의 개정) 화
순군조례·규칙의입법예고및공포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
한다.

제3조중 “기획예산실장”을 “기획감사실장”으로 한다.

제4조(화순군공보등의발행에관한조례의 개정) 화순군공보등의발행에
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중 “기획예산실장”을 “기획감사실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 (제1조관련)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<u>기획예산실장</u> 이 되며,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자로 한다. 1. (생 략) 2. (생 략) ② (생 략)	제7조(위원회 구성) ①----- ----- ----- ----- <u>기획감사실장</u> ----- 1 .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제12조(회계공무원)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·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. 1. (생 략) 2. 기금출납원 : <u>기획예산실장</u> ② (생 략)	제12조(회계공무원) ①----- -----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: <u>기획감사실장</u> ② (현행과 같음)

신·구조문대비표 (제2조관련)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구성) ① (생략)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<u>기획예산실장이</u> 된다 ③ (생략)</p>	<p>제2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<u>기획감사실장이</u> 된다 ③ (현행과 같음)</p>

신·구조문대비표 (제3조 관련)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 (예고기간) 행정절차법 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예고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히 추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<u>기획예산실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3조 (예고기간) ----- ----- ----- ----- ---<u>기획감사실장</u> ----- -----.</p>

신·구조문대비표(제4조관련)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위원회 구성) ① (생 략) ② (생 략)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,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, 총무과장,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, 위 촉위원은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교수가 위촉한 다. ④ (생 략) ⑤ (생 략)</p>	<p>제7조(위원회 구성) ①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----- ----- <u>기획감사실장</u> ----- ----- ----- ④ (현행과 같음) ⑤ (현행과 같음).</p>